「2024년도 국토안전관리원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지원기업 · 수행기관 모집공고

국토안전관리원은 맞춤형 혁신활동 종합지원을 통해 건설·시설안전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도 국토안전관리원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국토안전관리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도 국토안전관리원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 **(사업목적)** 건설・시설안전분야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으로 안전산업 혁신성장과 자생력 강화 도모

○ **(사업기간)** '24. 4월 ~ '24. 12월(예정)

* 협력재단 과제 최종 승인에 따라 과제 시작월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건설・시설안전분야 중소기업 9개사(기업당 1천만원 내외*)

* 신청·선정기업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생산성・품질향상 등 3개 과제유형(택1) 컨설팅/직접지원*

과제유형	지원과제	우대
생산성· 품질 향상	생산율 향상, 품질향상, 불량율 감소, 원가절감, 생산 안정화, 공정개선, 제품 개선, 시스템 최적화, 기술 고도화 등	스마트 건설 안전장비 및 스마트 진단장비 개발 관련 과제
신제품·시제품· 디자인 개발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프로세스 구축 등	
ESG경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중소건설사, 안전진단전문기관

* 직접지원은 혁신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기업당 지원 금액의 최대 50% 이내 지원 예정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해 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과제 추진

2 모집기업 개요

○ **(공모대상)** 지원기업 9개사, 수행기관 1개사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2024년 발급본에 한함)
  * 국토안전관리원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 **(수행기관)**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재단에 등록된 기관(모집 과제유형)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최근 3년간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기업 등 부정당적격업체(업무 협약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페널티가 부여된 업체), 복수의 주관기관의 참여기업으로 과제를 신청한 기업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사업계획 등 신청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 60점(지원기업), 80점(수행기관)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수행기관 평가기준		지원기업 평가기준	
기관현황 (30)	- 매출액 규모(15) - 인력현황(15)	기업현황 (30)	- 매출액 규모(15) - 인력현황(15)
사업계획서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20) - 사업 관리방안의 우수성(15) - 성과 도출계획의 적정성(15)	사업계획서 (70)	- 참여목적의 적합성(20) - 애로사항 등 지원필요성(20) - 지원요청내용의 적정성(20) - 기대효과(10)
수행실적 (20)	- 최근 3년 동사업 수행실적(20)	가점 (10)	- 과제유형별 우대사항 해당 시(5) - ['23년도 혁신파트너십] 참여 실적이 없는 기업(5)

3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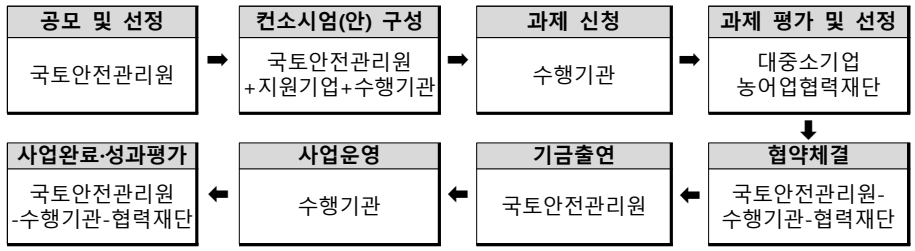

※ 과제 평가 및 선정을 통해 지원기업 확정 후, 수행기관 연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4 신청 방법

○ **(공모기간)** '24. 4 .2.(화) ~ 4. 11.(목), 10일간

○ **(신청방법)**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홈페이지 신청

* 상생누리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국토안전관리원' 입력 후 검색 → 「2024년도 국토안전관리원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관련문의)**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055-771-4762), contems@kalis.or.kr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1, 2 참조]
- (필수)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붙임 3 참조]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2024년 발급본, 유효기간 이내)
-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필수) 최근 3년간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사업수행실적 증빙(수행기관)
- (선택) 기타 가점항목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5 유의 사항

○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국내 법인만 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http://sminfo.mss.go.kr/)

○ 지원기업의 경우, 컨설팅 없이 직접 지원만으로는 지원 불가(컨설팅 기반의 직접지원 형태)

○ 사업 진행 시 정부연계지원사업(기술보호 현장자문, 법무지원단,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기술지킴서비스, 디지털포렌식지원 中 1가지 선택하여 이수 필수) 참여, 혁신파트너십 성과물 일체는 기술임치* 실시

*기술임치 선부담 납부 수수료는 관리원에서 전액 지원(환급)

○ **<u>기존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추후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중복 수혜여부 확인 필수</u>**